



소통하는 의정  
공감받는 의회

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
(제1차 교육위원회)  
2019. 8. 23. (금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최경분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발 의 자: 이 속 애 의원 등 7인

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19년 8월 13일
- 회부일자: 2019년 8월 14일

## 3. 개정이유

-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장애등급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

## 4. 주요내용

- 장애등급 인용 조항 개정(안 제3조)
  - 장애등급 → 장애 정도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장애인복지법」의 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(2019. 7. 1) 시행에 따라 장애등급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에 사용된 ‘장애등급’이라는 용어를 ‘장애 정도’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
-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판단됨